

## 국내 아동학대의 현황 및 신고체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 정신과학교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배기수 · 김신영\* · 정영기\* · 류경희†

= Abstract =

### The present state of child abuse in Korea and its system for child protection

Ki-Soo Pai, Shin-Young Kim\*, Young Ki Chung\*, and Kyeong Hee Ryu†

Department of Pediatrics, Psychiatry\*,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uwon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Seoul, Korea

An act of children's welfare was made in 1961 for the first time in Korea but it had been nothing but the name in view of practical impact to prevention of child abuse. Real undertakings of Child Abuse Prevention were commenced overtly since 2000 in Korea, when the law for children's welfare was revised to put protective settings for the victims and to establish criterion for children's safety. The history of Child Abuse Prevention is very short in Korea but the reporting cases increased very fast from 4,133 cases in 2001 up to 9,570 cases in 2008 with the enthusiastic activities from people of the associated organizations along with the national supports. But the portion reported by the mandated reporters such as teachers or doctors is still low compared to those of the developed countries. The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NCPA) was founded in 2001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prevent child abuse and to aid recovery of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including their families, through the cooperation of related organizations. NCPA refers reported cases of child abuse to appropriate local centers, operates a computer database system for case management, publicizes national reports of child abuse on a yearly basis and technically supports the Local Child Protection Agency (LCPA) by developing scales for assessment of child abuse and neglect and distributing programs for the education of mandatory reporters. LCPAs operate 24-hour telephone hotline, investigate and visit homes and provide in home services networking with local resources, and operate multidisciplinary teams for screening child abuse victims and supervising case management through multimodal systems. We summarized the present state of child abuse in Korea and reviewed the operating systems for child protection in this country. Through this article, we hope that medical peoples are to be informed on the seriousness of child abuse and to be able to devote themselves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Korean J Pediatr 2009;52:1185-1193)

**Key Words:** Child abuse prevention, Act of children's welfare, Child Protection Agency

### 서 론

국내에서 아동복지법이 1961년 처음으로 제정되었지만, 이렇다할만 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다가 2000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그 실질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내 아동보호사업은 이제 10년째를 맞이하여 선진국에 비하여 역사가 매우 짧지만 그 추진 속도와 성과는 놀랄만하다.

현재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중앙아동보호전문

기관(중앙기관) 1개소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지역기관) 44개소로 총 45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중앙기관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아동학대사례 데이터를 관리하고 아동학대예방사업에 필요한 교육, 연구, 홍보,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기관은 24시간 긴급전화 운영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학대위험으로부터 아동을 신속히 보호조치하고 제반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중앙기관의 '2008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를 중심으로 국내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절차의 흐름을 짚어봄으로써 우리나라 신고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Received : 26 October 2009, Accepted : 30 October 2009

Address for correspondence : Ki-Soo Pai, M.D.

Department of Pediatrics,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an 5, Woncheon-dong, Yongtong-gu, Suwon, 441-721, Korea

Tel : +82.31-219-5160, Fax : +82.31-219-5169

E-mail : kisoopai@ajou.ac.kr

**Table 1.** Number of Child Abuse Cases Reported to the Centers for Child Abuse Prevention in Korea from 2001 to 2008 (%)

Classification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Suspected as child abuse	2,606 (63.1)	2,946 (71.7)	3,536 (71.0)	4,880 (69.7)	5,761 (72.0)	6,452 (72.5)	7,083 (74.7)	7,219 (75.4)
General counsel	1,527 (36.9)	1,165 (28.3)	1,447 (29.0)	2,118 (30.3)	2,239 (28.0)	2,451 (27.5)	2,395 (25.3)	2,351 (24.6)
Total	4,133 (100.0)	4,111 (100.0)	4,983 (100.0)	6,998 (100.0)	8,000 (100.0)	8,903 (100.0)	9,478 (100.0)	9,570 (100.0)

Percentages in ( )

**아동학대 현황**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상담신고전화로 통해 접수된 아동학대 총 건수는 2008년 한 해 동안 9,570건이다. 이 중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사례는 7,219건(75.4%), 일반 자녀양육이나 아동의 문제행동 상담 등으로 직접적으로 아동학대와 관련 없는 일반상담은 2,351건(24.6%)이었다. 매년 신고사례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1년에 비해 2008년 신고 건수는 약 2.3배의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Table 1).

아동학대 상담신고전화 건수를 신고자 유형에 따라 보았을 때,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 2,389건(33.1%),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 4,380건(66.9%)으로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전체의 1/3에 해당되었다.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신고건수가 941건(13.0%)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사 887건(12.3%), 시설종사자 426건(5.9%), 의료인 105건(1.5%) 등의 순으로, 의료인의 신고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Table 2).

**2. 신고의무자의 규정**

현행 아동복지법 제26조에 규정된 ‘신고의무자’는 초·중등교사, 의사·간호사 등과 같은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장,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유치원의 장·교직원·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자·강사·교습자·직원·종사자, 소방구급대 대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포함된다. 이러한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될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3. 아동학대 피해아동 현황**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신고접수 시 학대로 의심되어 현장조사 실시 결과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총 건수는 2008년 한 해 동안 5,578건이며, 이 중에서 방임이 2,237건(40.1%)으로 가장 많았고 중복학대 1,895건(34.0%), 정서학대 683건(12.2%), 신

**Table 2.** Reporting Sources for the Suspected Cases of Child Abuse in Korea

Reporting sources	No. of cases (%)
Mandated reporters	2,389 (33.1)
care taker in facility	426 ( 5.9)
public social services personnel	941 (13.0)
public educational personnel	887 (12.3)
medical personnel	105 ( 1.5)
educational personnel in private institute	24 ( 0.3)
emergency personnel	6 ( 0.1)
Other reporters	4,830 (66.9)
parent(s)	1,311 (18.2)
neighbors or friends	845 (11.7)
relatives	502 ( 6.9)
police	332 ( 4.5)
religionist	54 ( 0.7)
social services personnel	1,176 (16.3)
stranger	70 ( 1.0)
self-report by children	73 ( 1.0)
anonymous sources	61 ( 0.8)
others	426 ( 5.8)
Total	7,219 (100)

**Table 3.** Differential Types of Child Abuse in Confirmed Cases

Type of abuse	No. of case (%)
Physical abuse	422 ( 7.6)
Emtional abuse	683 (12.2)
Sexual abuse	284 ( 5.1)
Neglect	2,237 (40.1)
Abandonment	57 ( 1.0)
Mixed abuse	1,895 (34.0)
Total	5,578 (100)

체학대 422건(7.6%), 성학대 284건(5.1%), 유기 57건(1.0%)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중복학대란 피해아동이 두 가지 유형 이상의 학대를 동시에 당한 경우로 이처럼 중복학대가 많다는 것은 다각도의 사례개입과 지원이 필요함을 뜻한다(Table 3).

한편 전국 시·도 별 0세에서 17세까지의 지역별 총 인구수를 기준으로 아동인구 천 명 당 아동학대 발생률을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 아동인구 천 명 당 전체 아동학대 발생률은 0.53명으로 분석되었다(Table 4).

학대피해아동의 성별과 연령을 살펴보면 2008년 아동학대사

례로 판정된 5,578건 가운데 남아가 2,801건(50.2%), 여아가 2,777건(49.8%)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Table 5). 연령별 분포는 학대피해아동의 과반수가 만 7-12세 아동으로 분석되어 학대가 발생하는 주된 연령층이 초등학교 학생에 해당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학령 전 영·유아에 비해 학령기 아동들이 상대적으로 학대 사실에 대하여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Table 6).

학대를 당한 아동이 속한 가족의 유형 중에서는 아버지와 아들로 이루어진 부자가정이 1,687건(30.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반가정과 모자가정이 각각 1,515건(27.2%)과 999건(17.9%)으로 비중이 높았다. 부자가정과 모자가정이 전체의 48.1%임을 알 수 있어 아동학대사례의 상당수가 한부모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7).

학대피해아동의 보호현황을 초기조치와 최종조치로 나누어

**Table 4.** Child Abuse Rates per 1,000 Child Population throughout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of Korea (2001-2008)

District	Child population*	Child abuse cases	Rate of child abuse
Seoul	1,911,431	721	0.38
Pusan	663,558	307	0.46
Daegu	534,473	124	0.23
Incheon	593,295	281	0.47
Gwangju	357,099	160	0.45
Daejeon	346,794	154	0.44
Ulsan	265,893	237	0.90
Gyeonggi	2,664,793	1,350	0.50
Gangwon	304,074	276	0.90
Choongbuk province	323,340	341	1.10
Choongnam province	412,073	196	0.48
Chunbuk province	376,520	355	0.94
Chunnam province	376,151	330	0.90
Kyungbuk province	520,029	344	0.66
Kyungnam province	706,487	273	0.39
Cheju province	134,524	129	0.96
Total	1,911,431	5,578	0.53

Statistical data for the estimated population of 2008 year is from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ges of 0-17 years; Rate are expressed in %.

**Table 5.** Gender of Victims from Child Abuse in Korea (2001-2008)

Gender	Boys	Girls	Total
Number (%)	2,801 (50.2)	2,777 (49.8)	5,578 (100.0)

**Table 6.** Age Distribution of Victims from Child Abuse in Korea (2001-2008)

Age	<1	1-3	4-6	7-9	10-12	13-15	16-18	Total
Number (%)	131 (2.3)	476 (8.5)	697 (12.5)	1,319 (23.7)	1,452 (26.0)	1,098 (19.7)	405 (7.3)	5,578 (100.0)

보면,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는 원가정에 아동이 보호된 경우가 3,936건(70.6%)으로 가장 많았고, 격리보호가 1,587건(28.4%), 초기에 사망한 경우 3건(0.1%),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를 개입하지 않고, 적절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타기관으로 사례를 완전히 의뢰한 경우가 52건(0.9%)이었다(Table 8). 초기 조치에서 가정으로부터 격리보호 된 학대피해아동 중에서는 일시 보호조치가 925건(58.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친인척보호 284건(17.9%), 기타 193건(12.2%), 장기보호 169건(10.6%), 가정위탁 16건(1.0%)의 순으로 밝혀졌다(Table 9). 여기서 일시보호조치 된 아동들은 대부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룹홈에 보호되었다가 원가정복구가 불가능하다 판단될 경우 장기시설 혹은 가정위탁 등으로 재배치된다.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치 및 서비스 제공 등 사례관리를 진행하다가 연말까지 종결된 사례만을 대상으로 피해아동에게 최종적으로 취해진 조치결과를 분석하였을 때, 2008년 종결사례 1,671건 가운데 원가정보호조치 된 경우는

**Table 7.** Family Types to which the Victims of Child Abuse Belongs (2001-2008)

Family types	No. of cases (%)
Biological parents family	1,515 ( 27.2)
Single-father family	1,687 ( 30.2)
Single-mother family	999 ( 17.9)
Unmarried family	97 ( 1.7)
Remarried family	395 ( 7.1)
Kinship care	358 ( 6.4)
Cohabiting without marriage	198 ( 3.6)
Foster carer	26 ( 0.5)
Adoption	25 ( 0.4)
Facility protection	104 ( 1.9)
Living without care taker	35 ( 0.6)
Unknown	37 ( 0.7)
Others	102 ( 1.8)
Total	5,578 (100.0)

**Table 8.** Initial Determinations for the Victims of Child Abuse after Intervention by the Child Abuse Prevention Center

Original family protection	Isolation protection	Fatality	Request to other facilities	Total
3,936 (70.6)	1,587 (28.4)	3 (0.1)	52 (0.9)	5,578 (100.0)

**Table 9.** Types of Isolation Protection Provided at Initial Stage of Intervention by the Child Abuse Prevention Center (Unit : Number of cases, %)

Kinship care	Temporary isolation protection	Long term isolation protection	Foster care	Others	Total
284 (17.9)	925 (58.3)	169 (10.6)	16 (1.0)	193 (12.2)	1,587 (100.0)

1,061건(63.5%)으로 초기조치와 마찬가지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격리보호 상태로 종결 된 사례도 531건(31.8%)으로 초기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드러나 사망아동은 최종조치에서 7건으로 초기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하였다(Table 10). 최종 격리보호조치의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격리보호 된 531건 중에 장기격리보호조치가 256건(48.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친인척보호조치가 128건(24.1%), 일시보호조치 79건(14.9%), 기타 53건(10.0%), 가정위탁 15건(2.8%) 등의 순으로 파악되었다(Table 11).

한편 피해아동 현황에서 서비스지원을 살펴보면 '사례 진행 중' 제공된 서비스는 총 180,906회, '사례 종결 이후' 피해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총 26,205회로 사례진행 중에 약 7배 정도의 서비스가 지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아동에 대한 일시보호서비스가 다른 서비스 유형에 비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진행 중 사례'에서 66,336회(36.7%), '사후 관리 사례'에서 8,466회(32.3%) 정도 지원되었다. 그 다음으로 '진행 중 사례' 피해아동에게 상담서비스 38,103회(21.0%), 심리치료 서비스 18,545회(10.3%), 가족기능 강화 서비스 10,041회(5.6%), 의료서비스 6,805회(3.7%) 등의 순으로 서비스가 지원된 반면, '사후 관리 사례' 피해아동에게는 심리치료서비스 4,507회(17.2%), 상담서비스 4,449회(17.1%), 가족기능 강화 서비스 2,046회(7.8%), 의료서비스 710회(2.7%)의 순으로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졌다(Table 12).

**4. 학대행위자 현황**

2008년 학대행위자 현황 분석결과에 의하면, 아동학대행위자는 주로 30-40대의 남성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Table 13). 또한 학대행위자 가운데 80.7%가 피해아동의 부모로 파악되어, 가정 내 학대문제가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비율이 가장 높은 현상은 매년 반복되고 있으므로, 아동학대문제를 접근하는 방향도 행위자가 가족이라는 특수성을 받

**Table 10.** Final Determinations for Victims of Child Abuse after Intervention by the Child Abuse Prevention Center (Unit : Number of cases, %)

Original family protection	Isolation protection	Fatality	Request to other facilities	Total
1,061 (63.5)	531 (31.8)	7 (0.4)	72 (4.3)	1,671 (100.0)

**Table 11.** Types of Isolation Protection Provided at Final Stage of Intervention by the Child Abuse Prevention Center (Unit : Number of cases, %)

	Kinship care	Temporary isolation protection	Long term isolation protection	Foster care	Others	Total
Number (%)	128 (24.1)	79 (14.9)	256 (48.2)	15 (2.8)	53 (10.0)	478 (100.0)

영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Table 14). 학대행위자의 특성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양육태도 및 방법의 부족'으로 전체의 30.2%를 차지하였고, 더불어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이 24.6%, '중독 및 질환문제'가 12.7%로, 다른 특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파악되었다(Table 15).

학대행위자에게 취한 최종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지속관찰이

**Table 12.** Service Types Provided for the Victims of Child Abuse by the Child Abuse Prevention Centers in Korea from 2001 to 2008 (Unit : Number of cases, %)

Service types	Service before termination	Service after termination
Counseling services		
counseling individually	26,095 (14.4)	3,209 (12.3)
counseling in group	12,008 ( 6.6)	1,240 ( 4.8)
counseling with facility	3,697 ( 2.0)	327 ( 1.2)
counseling with others	715 ( 0.4)	26 ( 0.1)
Medical services		
hospital treatment	4,190 ( 2.3)	542 ( 2.1)
outpatient treatment	2,615 ( 1.4)	168 ( 0.6)
Psychological therapy		
psychological test	1,379 ( 0.8)	166 ( 0.6)
play therapy	5,306 ( 2.9)	1,524 ( 5.9)
art therapy	5,507 ( 3.0)	1,197 ( 4.6)
family treatment	304 ( 0.3)	62 ( 0.2)
others	6,049 ( 3.3)	1,558 ( 5.9)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2,095 ( 1.2)	167 ( 0.6)
Educational services to victims	27,334 (15.1)	4,843 (18.5)
Temporary protection services	66,336 (36.7)	8,466 (32.3)
Services for family enforcement		
family supporting services	8,221 ( 4.5)	1,821 ( 6.9)
connecting to community settlement	1,743 ( 1.0)	224 ( 0.9)
connecting to public aids	77 ( 0.1)	1 ( 0.0)
Others	7,235 ( 4.0)	664 ( 2.5)
Total	180,906 (100)	180,906 (100)

**Table 13.** Age and Gender of Perpetrators of Child Abuse in Korea from 2001 to 2008 (Unit : Number of cases, %)

Age and gender	Number
Gender	
men	3,453 (61.9)
women	2,092 (37.5)
unknown	33 ( 0.6)
Age	
under 19	786 (14.1)
20-29	370 ( 6.6)
30-39	1,609 (28.9)
40-49	2,174 (39.0)
50-59	441 ( 7.9)
60-69	123 ( 2.2)
over 70	75 ( 1.3)
unknown	0
Total	5,578 (100)

**Table 14.**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erpetrators and the Victims of Child Abuse in Korea (Unit : Number of cases, %)

Relationships	Number of cases
Parent (s)	4,719 (84.5)
biologic father	2,855 (51.2)
biologic mother	1,648 (29.5)
stepfather	52 ( 0.9)
stepmother	130 ( 2.3)
adoptive father	12 ( 0.2)
adoptive mother	22 ( 0.4)
Relatives	361 ( 6.5)
grandfather	60 ( 1.1)
grandmother	98 ( 1.8)
maternal grandfather	8 ( 0.1)
maternal grandmother	28 ( 0.5)
another relatives	145 ( 2.6)
siblings	22 ( 0.4)
Other person	394 ( 7.1)
parent's partner	78 ( 1.4)
public educational personnel	43 ( 0.8)
educational personnel in private institute	16 ( 0.3)
care taker in facility	88 ( 1.6)
neighbors	99 ( 1.8)
stranger	70 ( 1.2)
Unknown	37 ( 0.7)
Others	67 ( 1.2)
Total	5,578 (100)

4,369건(78.3%), 고소·고발 237건(4.3%), 타기관 의뢰 167건(3.0%), 만나지 못함이 805건(14.4%)으로 집계되었다(Table 16).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로 ‘만나지 못함’ 비중이 높은 원인은 학대행위자가 아동을 남겨두고 가출하거나 아동을 유기한 경우, 또는 아동이 낯선 사람에게 성학대를 당한 경우, 학대행위자가 상담원과의 만남을 완강히 거부하는 등의 경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행위자를 만나고자 할 때 강하게 저항·거부하는 행위자들에 대한 조치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 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

한편 2008년 한 해 동안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고소·고발 조치를 취한 237건 사례에 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최종적으로 파악된 내용을 조사하고, 이를 세부 항목별로 분석해 보면, 검찰이나 법원으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수사만 이루어진 사례가 70건, 경찰수사를 거쳐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아직 법원으로 기소되지 않은 사례는 총 43건, 검찰청에서 마지막 법원까지 기소된 사례는 124건으로 파악되었다. 이미 법원판결을 받은 사례는 형사처분이 84건(35.4%), 보호처분이 8건(3.4%)으로 조사되었다(Table 17). 이처럼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된 사례가 대개 형사처벌을 면할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처분도 극히 적게 받게 되는데, 이는 학대행위자의 제법 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상담·치료나 수감명령과 같은 보호처분 조치가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아동보호를 위한 사법부의 인식개선과 사회·제도적 시스템 보완

**Table 15.** Underlying Backgrounds of Perpetrators of Child Abuse in Korea (Unit : Number of cases, %)

Characteristic	Number
Lack of structure & caring skills	5,111 (30.2)
Addiction(alcohol, drug) or diseases	2,153 (12.7)
Character problems	1,574 ( 9.3)
Family isolation	4,170 (24.6)
Parent's history of childhood abuse or aggressive & dangerous behavior	1,007 ( 6.0)
Sexual problems	208 ( 1.2)
Unwanted baby	154 ( 0.9)
Having conflict with family or religious problems	1,574 ( 9.3)
Others	449 ( 2.7)
Unknown	518 ( 3.1)
Total	16,918 (100)

\*Data are including multiple answers

**Table 16.** Final Determinations for the Perpetrators of Child Abuse after Intervention by the Child Abuse Prevention Center (Unit : Number of cases, %)

Continuous observation	Indictment and criminal investigation	Request to other facilities	Not investigating	Total
4,369 (78.3)	237 (4.3)	167 (3.0)	805 (14.4)	5,578 (100.0)

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더불어 아직까지 아동복지법 상에서 학대행위자에 관하여 보호관찰, 상담수감명령과 같은 보호처분 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비자발적인 행위자에 관하여 상담과 치료적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아동복지법 내에 학대행위자에 관한 보호처분 조항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5.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을 살펴보면 진행 중인 사례에 제공된 서비스는 총 38,222회이었으며, 사후관리 중인 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4,835회로, 진행 중 사례가 사후관리 사례보다 약 8배 정도 서비스의 양이 많았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사례개입 중이거나 종결한 사례 모두 학대행위자에게 상담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즉 개별·집단상담을 포함한 상담서비스는 사례 진행 중 행위자에게 25,189회(65.9%), 사후관리 중인 행위자에게는 2,791회(57.7%) 실시되어 두 경우 모두 상담서비스가 전체 서비스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또한 의료서비스도 진행 중 사례는 7,702회(20.2%), 사후관리는 1,481회(30.7%) 제공되어 전체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아동학대에방교육은 진행 중 사례에서는 2,456회(6.5%), 종결 후 사후관리 사례에서는 289회(6.0%) 제공되었고, 전체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비슷하였다. 심리검사, 가족치료, 기타치료와 같은 심리치료서비스는 진행 중 사례가 1,171회(3.0%), 사후관

**Table 17.** Results of Indictment and Criminal Investigation against the Perpetrators of Child Abuse in Korea (Unit : Number of cases, %)

Results	Number
Under investigation by the police	70 (29.5)
Being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16 ( 6.7)
Termination of investigating	54 (22.8)
Being investigated by the prosecution	43 (18.2)
Being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8 ( 3.4)
Non-prosecution	23 ( 9.7)
Prosecution	12 ( 5.1)
Court's ruling	124 (52.3)
Being tried	
being at the first trial	10 ( 4.2)
being at the second appeal trial	14 ( 5.9)
being at the Supreme Court	8 ( 3.4)
Service disposition	
obligation to be under observation	8 ( 3.4)
public service order	0
obligation to have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and counseling	0
obligation to be under observation +public service order	0
obligation to be under observation +public service order	0
obligation to be under observation +public service order +obligation to have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and counseling	0
Criminal charges	
innocence	2 ( 0.8)
probation	1 ( 0.4)
fines	11 ( 4.6)
custody	0
imprisonment	0
penal servitude	47 (19.9)
life sentence	0
capital punishment	0
suspension of a sentence+imprisonment	0
suspension of a sentence+penal servitude	23 ( 9.7)
Total	237 (100)

리 사례가 90회(1.8%)로, 진행 중인 사례의 행위자에게 사후관리 중인 행위자 보다 13배 정도 많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지원서비스, 사회복지관의뢰, 수급권연결을 포함한 가족기능강화서비스도 진행 중인 사례에 325회(0.8%), 사후관리 사례에 48회(1.0%) 실시되어, 전체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후관리가 다소 높았지만 실제 행해진 서비스 량은 진행 중 사례가 사후관리 사례 보다 약 6.8배 정도 많았다(Table 18).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가정의 역기능적인 요소를 감소시키고 건강한 기능을 회시킴으로써 중국적으로 아동을 가정 내에 재통합시키고, 가족을 보존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과 행위자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비가해 부모 및 가족에게도 필요한 서

**Table 18.** Service Types Provided to the Perpetrators of Child Abuse by the Child Abuse Prevention Center in Korea (Unit : Number of cases, %)

Service types	Service before termination	Service after termination
Counseling individually	24,924 (65.2)	2,767 (57.2)
Counseling in group	265 (0.7)	24 (0.5)
Counseling with facility	631 (1.7)	77 (1.6)
Hospital treatment	7,371 (19.3)	1,468 (30.4)
Outpatient treatment	331 (0.9)	13 (0.3)
Psychological test	168 (0.4)	7 (0.1)
Family treatment	474 (1.2)	69 (1.4)
Counseling with others	529 (1.4)	14 (0.3)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2,456 (6.5)	289 (6.0)
Family supporting services	286 (0.7)	45 (0.9)
Connecting to community settlement	19 (0.0)	0 (0.0)
Connecting to public aids	20 (0.1)	3 (0.1)
Others	618 (1.6)	43 (0.9)
Counseling with others	130 (0.3)	16 (0.3)
Total	38,222 (100)	4,835 (100)

**Table 19.** Service Types Provided for the Non-abuser Parent and Family Members of Victims by the Child Abuse Prevention Center in Korea (Unit : Number of cases, %)

Service types	Service before termination	Service after termination
Counseling individually	25,689 (80.3)	4,484 (71.5)
Counseling in group	215 ( 0.7)	26 ( 0.4)
Counseling with facility	806 ( 2.5)	865 (13.9)
Hospital treatment	1,048 ( 3.3)	1 ( 0.0)
Outpatient treatment	86 ( 0.3)	6 ( 0.1)
Psychological test	139 ( 0.4)	18 ( 0.3)
Family treatment	302 ( 0.9)	120 ( 1.9)
Counseling with others	394 ( 1.2)	31 ( 0.5)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1,380 ( 4.3)	293 ( 4.7)
Family supporting services	624 ( 2.0)	206 ( 3.3)
Connecting to community settlement	16 ( 0.1)	2 ( 0.0)
Connecting to public aids	14 ( 0.0)	6 ( 0.1)
Others	545 ( 1.7)	109 ( 1.7)
Counseling with others	731 ( 2.3)	100 ( 1.6)
Total	31,989 (100)	6,267(100)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Table 19).

### 아동학대의 신고 및 보호체계

아동학대 신고 및 보호절차는 크게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사례관정, 보호조치, 서비스제공, 사례종결 및 사후관리로 진행되며 이러한 절차의 흐름을 도식화하여 정리하면 Fig. 1, 2와 같다.

####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재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하면 앞서 언급한 신고의무자 뿐

만 아니라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신고 및 상담전화(1577-1391), 보건복지콜센터(129)를 통해 24시간 상시적으로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그 이외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우편(전자) 및 기관방문을 통한 신고접수, 관련기관으로부터의 학대사례 의뢰, 경찰 등에 의한 신고 등이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상담신고 전화를 접수받은 후 아동학대의심사례인지 일반상담인지를 구분하여 현장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신고접수 당시 학대의 정도가 심각하고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2시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한다. 그 이외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가 아닌 경

우에는 신고접수를 받은 시점부터 7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2.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신고접수 내용을 통해 학대가 의심된다고 판단되면 아동복지법 제27조에 의거 피해아동 및 행위자에 관한 기초자료와 주변인 조사를 포함한 포괄적인 정보 수집, 학대여부 및 학대 위험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이를 통해 아동학대 여부와 위험정도를 사정하게 된다. 또한 현장조사 당시 학대로 인해 아동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으며 응급한 치료 및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가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또는 사법경찰은 피해아동에 대하여 긴급격리보호조치를 취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룹홈 또는 일시보호시설에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조치 한다.

사례판정은 현장조사를 실시한 상담원의 소견, 현장조사 당시 사용한 아동학대 사정척도 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사례회의, 아동과 관련하여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판정위원회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사례판정 유형은 크게 ‘아동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로 구분된다. 여기서 잠재위험사례는 현장조사 당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아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되지 않았으나,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모니터링을 할 필요성이 있는 사례를 의미하며, 일반사례는 신고접수 시 아동학대로 의심되었으나 현장조사 결과 신고내용과는 달리 실제 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를 뜻한다.

## 3. 응급조치의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제27조제1항(응급조치의무 등)에는 아동학대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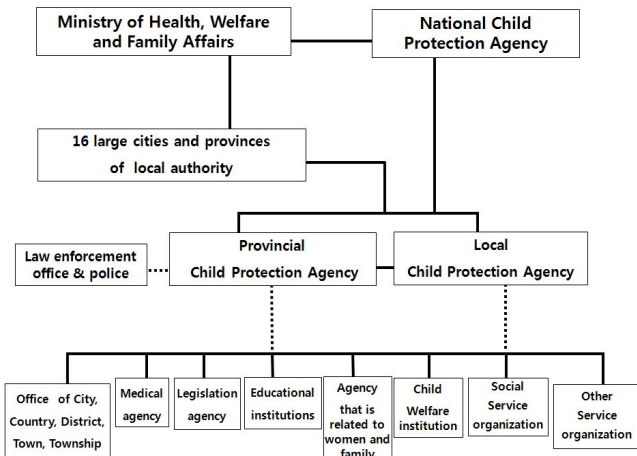


Fig. 1. Structure of child protection in Korea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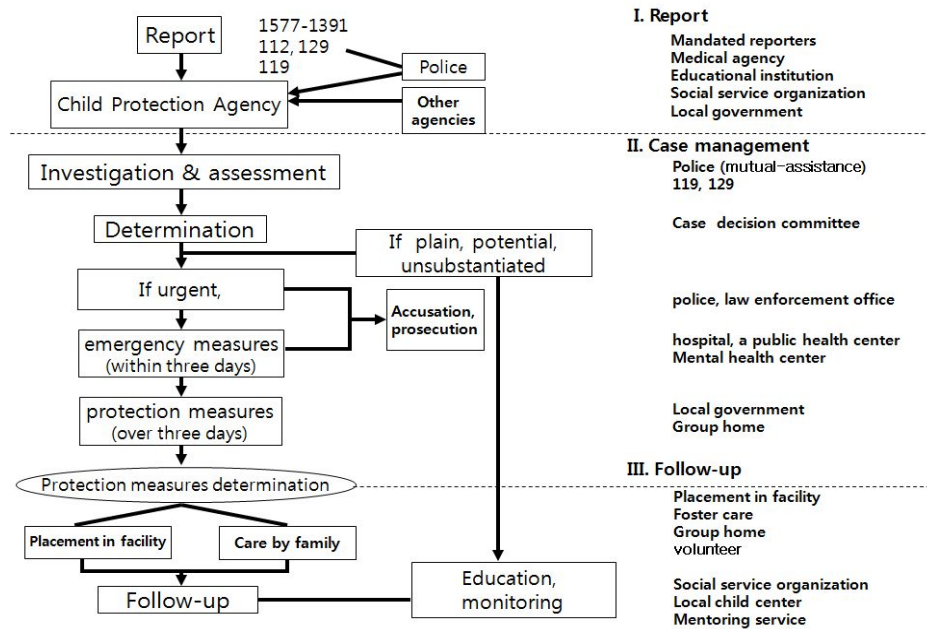


Fig. 2. Management steps, contents and the associated agencies for child protection in Korea (2009).

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짓고 있다.

#### 4. 보호조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에 관하여 현장조사 내용 및 사례판정 결과, 학대피해아동 본인과 보호자, 그 외 중요 관련인의 의견, 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회 및 자체사례회의 의견,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자원 및 인적자원의 연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학대피해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조치는 크게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로 구분되며,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조치결정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 1) 원가정보호

일반적으로 학대 위험정도가 높지 않으며, 가정 내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보호요인이 있는 경우 학대피해아동을 원가정 보호조치를 한다.

##### 2) 격리보호

학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호자의 아동보호능력 및 의사가 없어 재학대 발생 위험이 많은 경우, 행위자가 아동을 해치거나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아동 자신도 그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진술함에도 불구하고 비가해 보호자가 아동을 돌보기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서도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경우 등에는 피해아동을 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취한다(※ 보호조치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내지 제4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호조치를 의뢰하고, 그에 따른 행정 절차를 밟아 피해아동에 관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처럼 격리된 피해아동은 친족에 의해 보호되거나, 위탁가정에서 보호, 학대피해아동 전담 공동생활가정 또는 일시보호시설에서 일시적으로 보호·양육되거나 또는 장기보호시설에 입소된다.

##### 3) 타 기관 의뢰

아동학대사례이지만 사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관 기관에 사례를 의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타 기관으로 사례를 의뢰한다.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는 사례를 개입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초기에 학대 재발 위험이 높아 피해아동을 격리보호조치시켰다 하더라도 학대가정의 기능이 회복되고 생활환경이 개선되거나, 보호자의 학대에 대한 인식 및 양육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재학대 발생 가능성이 낮아진 경우, 다시 피해아동을 가정 내로 복귀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학대행위자에 관한 조치결정 유형은 행위자에 대한 지속관찰 및 상담, 고소·고발 및 수사의회 등으로 구분되며 학대정도가 심각하여 친권에 관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

고발 외에도 아동복지법 제12조, 민법 제924조,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에 의거하여 행위자에 대한 친권상실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여기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친권상실 또는 제한을 청구할 수 있다.

#### 5. 서비스제공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피해아동, 학대행위자, 학대와 관련 없는 비가해부모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학대재발 방지는 물론 궁극적 가족보존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학대피해아동에게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대로 인한 후유증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며, 지속적인 개별상담 및 심리치료, 병원치료 등의 구체적인 지원을 해 준다. 학대행위자에게는 학대유발요인을 감소시켜 재학대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행위자에게 재학대 예방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실시, 알콜중독·정신질환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 연계를 통해 치료를 지원해 준다. 또한 학대가 발생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복지인프라 네트워크를 통해 가족기능 강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6. 사례종결 및 사후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종결을 고려하는 경우는 학대피해아동이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을 통해 학대후유증이 현저히 감소되고 긍정적인 행동변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아동 스스로 자기보호능력 및 위기해결능력이 생겼을 때, 학대피해아동의 안전이 보장되는 장기보호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학대행위자가 상담·치료를 적극 참여하여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이 희박해 진 경우 등이다. 이 때 사례종결의 결정은 아동학대 사정적도 결과와 자체사례회의 등의 사례평가를 거쳐 이루어진다.

사례를 종결한 이후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재학대의 예방과 가족의 안정유지를 위해 6개월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이상 직접방문, 전화상담 등의 방법으로 학대피해아동 또는 행위자, 가족, 주변관계자들을 통해 재학대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사후관리 시 의뢰 및 연계기관과 협력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도 하는데, 학대피해아동 및 행위자의 상태와 변화를 관찰하거나 가정상황을 체크함으로써 학대 혹은 위기적 상황에 대하여 관찰하고 있다.

### 외국의 아동보호 관련법제도에서 배울 점

#### 1. 학대아동의 보호 및 복귀 조치관련 절차 규정

미국, 대만, 호주,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아동의 격리보호 및 가정복귀와 관련하여 명확한 법적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사법기관의 판결에 따라 격리보호 및 가정복귀가 수행되고 있다. 특



히 미국은 법적 처리 절차의 시기 및 방법, 참여자 등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격리보호 및 가정복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기관의 권한에만 의존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리 절차 및 기간 등에 대해서 명시가 미흡하다. 이에 우리나라도 적절한 평가절차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격리보호 및 가정복귀를 명하는 체계마련이 필요하다.

## 2. 학대아동의 영구배치 계획 및 절차 마련

일시 격리보호되었던 아동들이 보육원 등 장기보호시설로 가게 될 경우, 이들이 다시 가정으로 복귀되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일정기간 장기보호 후 가정복귀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판단이 될 경우, 자동적으로 친권상실청원 등의 과정을 거쳐 위탁가정 및 입양 등에 영구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 3. 아동격리판정을 위한 전문가집단 구성

아동에게 있어 '격리'가 전반적인 발달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법원에서 격리 및 가정복귀 여부를 결정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판사, 의사, 각계전문가, 임상심리사, 사례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전문가집단 구성 및 제도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일시보호 및 장기격리보호여부를 결정할 때, 각계 전문가, 사례 담당자, 아동상담소장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미국에서는 격리보호된 사례를 평가할 때 법원에서 임명한 관련 기관의 전문가와 사례담당자로 구성된 재조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

## 4. 사후관리체계 마련

미국에서는 위탁보호사례를 제외한 사례의 사후관리를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담당하고, 입양사례에 대해서는 18세가 될 때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하도록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례종결 후 6개월 이상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월 1회 이상 전화 및 방문 등으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어 현실적이지 못하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을 감안할 때, 일본처럼 지역사회내 관공서 및 교육기관 등과 연계하는 것 뿐 아니라 지역사회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무엇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인력을 증강시키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 5. 학대행위자에 대한 강제적 상담, 교육

미국은 아동과 가정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기에,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부모교육, 정신질환치료, 약물중독치료프

로그램, 가족보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도 아동을 학대한 부모 및 보호자에게 4시간 이상의 부모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강제하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반할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대행위 상습자에게는 가중처벌의 근거마련이 필요하다.

## 6. 가족보존을 위한 정책 마련

미국의 경우 아동보호체계가 초기에는 '격리보호'를 위주로 하였다가 이후 '가족보존 및 가족통합'의 예방차원으로 전환 발전하였음을 감안하여, 아동보호체계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조속히 '가족보존을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 맺 음 말

의료인은 아동학대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의료인이 능동적으로 기술지원 및 사회지원을 해야만 우리나라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정상적 궤도를 달릴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다수의 의료인들이 아동학대로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무수한 아동들을 직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 글을 계기로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대한 의료계의 이해가 증진되고, 지역별로 아동학대예방사업에 촉매역할을 담당하는 의료인이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References

- 1) Child Welfare Act.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http://www.law.go.kr>
- 2)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of Korea. <http://www.korea1391.org/>
- 3) National report of child abuse in 2008.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of Korea, 2009
- 4) Guidelines for worker of child protection agency.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of Korea, 2009
- 5) Oversea's manual for treating victims of crime (Canada, France, Japan). Department of Human Right, Ministry of Law Korea, 2009
- 6) Pai KS. Promotion of Child Abuse Prevention through the Early Detection System, An academic report for the Department of Welfare, National Assembly of Korea. 2006
- 7) Pai KS. Doctor's Role in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in Korea. J Jpn Pediatr Soc 2009;113:199-21.